

2020

교직이수 가이드북

Curriculum for Teaching Profession Guidebook

2018학년도 입학자
(2020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적용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국민대학교 교직과정 홈페이지

<http://teaching.kookmin.ac.kr> 

Guidebook

contents



교직과정 이수안내

I.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표시과목 현황	06
II. 교원자격증 취득 절차	07
III. 교원자격증 복수전공이수 신청 방법	08
IV. 교원자격증 취득 상세 기준	09
V. 교직과목 개설 학기 및 과목명	10
VI. 교직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 관련 FAQ	10
VII. 교직이수 유의사항	11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12

기타프로그램 안내

I.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29
II. (산업체) 현장실습	33
III.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34
IV.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35





KOOKMIN UNIVERSITY

교직과정
이수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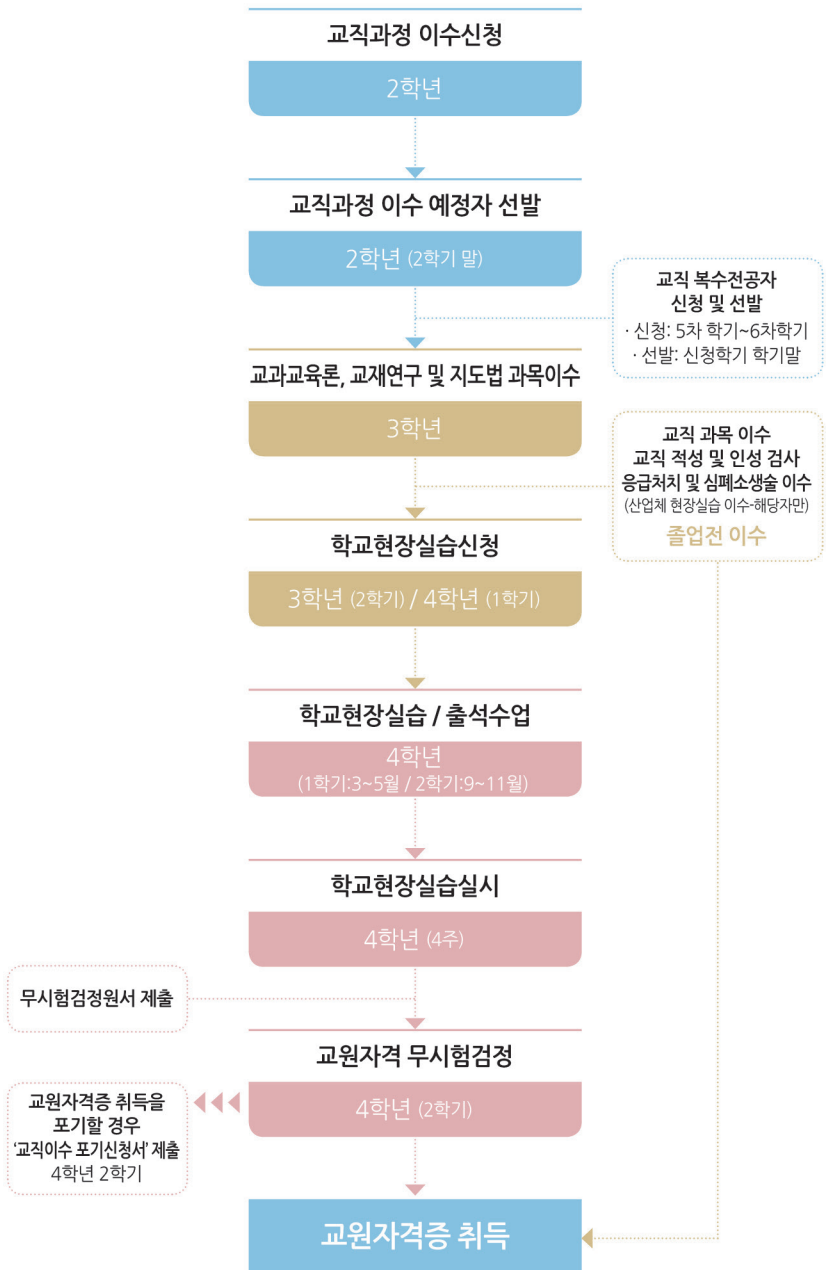
I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표시과목 현황

※2018년도 승인인원기준

단과대학	학과명	자격종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승인인원 (주전공)	비고
글로벌 인문 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4	
	영어영문학부 영미어문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3	
	영어영문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3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국어	4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국어	3	
	한국역사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5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5	
	정치외교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4	
	교육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	40	사범계
법과대학	법학부 공법학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6	
	법학부 사법학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5	
경상대학	경제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4	
	국제통상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	3	
창의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기계	4	공업계열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기계	3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자	8	
과학기술대학	나노전자물리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물리	4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영양교사(2급)	3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연극영화	2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연극영화	2	
체육대학	스포츠교육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체육	3	
	스포츠산업·레저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체육	2	
	스포츠건강재활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체육	3	
자동차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기계	4	공업계열
합계				127	

※복수전공 승인인원 : 주전공 승인인원의 2배

II 교원자격증 취득 절차



III 교원자격 복수전공이수 신청 방법

1. 신청시기

5차 학기 및 6차 학기 재학 중

2. 신청대상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교원자격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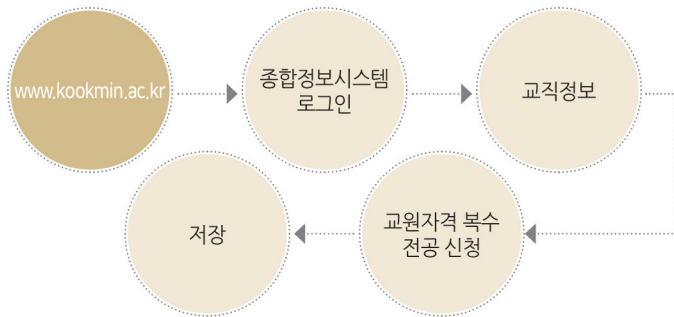
3. 선발전공

다전공 신청이 가능한 학과(전공)중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4. 선발인원

각 연도별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

5. 신청방법



6. 제출기한

별도 공지 (교직과정부 홈페이지 참조)

7. 유의사항

- 희망자는 다전공 승인 완료 후 동일 전공으로 교원자격 복수전공 신청을 하여야 함.
- 주전공 학위 및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 다전공 학위취득요건 및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교원자격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함.
- 교원자격 복수전공 선발 결과는 해당학기 말에 확정·통지함.
- 탈락자는 당해 연도 2학기에 여석이 남아 있는 전공을 신청하면 추가 선발이 가능함.
- 교원자격 복수예정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취득요건을 충족하여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함.

8. 교원자격 복수 예정자 선발 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910-4034

IV 교원자격증 취득 상세 기준

1. 제1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취득자격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취득자(교직이론 12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교육실습 4학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취득자(7과목과 21학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해당 학과 전공 50학점 이상 취득자
성적	·전공 성적 75/100점, 교직 성적 80/100점 이상인 자
기타	·공업계 계열 표시과목 이수자는 반드시 현장실습 이수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반드시 '영양사면허증'취득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합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졸업하는 학기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2. 제2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취득자격	·교직이수예정자 및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주전공 및 다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제1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한 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취득자(7과목과 21학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해당 학과 전공 50학점 이상 취득자
성적	·전공성적 75/100점 이상인 자
기타	·공업계 계열 표시과목 이수자는 반드시 현장실습 이수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반드시 '영양사면허증'취득 ·졸업하는 학기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V 교직과목 개설 학기 및 과목명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제1학기		제2학기		비고
			학점	시간	학점	시간	
2학년 ~ 4학년	교직	교육심리학	2	2	2		교직이론 (6과목이상 이수)
	교직	교육학개론	2	2	2	2	
	교직	교육사회학	2	2	2	2	
	교직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2	2	
	교직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2	2	
	교직	교육과정	2	2	2	2	
	교직	교육평가	2	2	2	2	
	교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2	2	교직소양 (모두이수)
	교직	특수교육학개론	2	2	2	2	
	교직	교직실무	2	2	2	2	
	교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2	2	2	60시간
	교직	교육봉사활동	2	P/N	2	P/N	
	교직	학교현장실습	2		2		

·3번의 교내출석수업
·4주간 현장실습

VI 교직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관련 FAQ

Q 타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해도 되나요?

A 타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되지만 전공과목 학점 합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만 수강하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각전공에 따라 2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인정되는 경우, 또는 2개를 모두 이수해도 1개교과목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이수과목 표 비고란에 기재된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교직이수 유의사항

1. 교직이수 시 유의사항

- ① 교원자격사정과 학부 졸업사정 기준은 다릅니다. (졸업가능여부 문의는 해당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점수 계산 시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점평균: (교과목별 평점 × 교과목별 학점) ÷ 총 학점
단, P/N 교과목 제외

백분율 점수: $60 + (\text{평점평균} - 1) \times 40 / 3.5$

- ③ 기본이수과목은 교직이수예정자 선발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책자에 기재된 기본이수과목은 2019년도 2월 선발자 기준 기본이수과목입니다.
그 밖의 선발자는 교직과정부 홈페이지에서 선발년도에 따른 기본이수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이수구분의 알파벳 (예를 들어 교직(H))은 성적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직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 유의사항

- 1) 기본이수과목을 타전공(일반선택)에서 이수한 경우 기본 이수과목으로는 인정하나 전공과목 취득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 (경우에 따라 전공과목 추가 이수 필요)
- 2)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전공으로 개설된 경우만 인정되므로 동일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서는 안됨.
- 3) 평점평균의 계산에 있어 기준학점보다 많이 이수한 경우라도 모든 이수과목의 학점을 합쳐 하여 산정함. (학점이 좋은 과목만 선별하여 평점평균을 산정하지 않음.)
- 4) 4학년 1학기(7차학기)에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교직이수사항 조회 또는 교직과정부(T.910-4225)에 문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5)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교직이수사항 조회 메뉴는 재학생의 평균값으로 세팅되어 있어 선발년도 해당 교직이수가이드북과 반드시 비교하며 참조바람.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1단계

주전공 교직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취득하고
교직과목성적이 80/100점 이상인가?

교과목명		이수사항				
		학점 ^①	성적등급	평점 ^②	①×②	평점계
교직이론 (6과목 선택이수)	교육심리학	2				
	교육학개론	2				
	교육사회학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직소양 (모두 이수)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육실습 (모두 이수)	학교현장실습	2				
	교육봉사활동	2		-	-	-
합계		22			③	$\frac{③}{20}$ =평점평균

* 교직이론에서 6과목(12학점)이상, 교직소양 3과목(6학점), 교육실습 2과목(4학점) 이수

* 평점평균 계산시 P/N 평가인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제외함.

* 성적등급별 평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 교직 성적 기준 : 백분율 점수가 80점(평점평균 2.75) 이상이어야함.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2단계

주전공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는가?

교과목명	이수사항			
	학점	이수여부	성적	비고
(각과)교과교육론	3			
(각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각과)교과논리및논술	2			
합계				

*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은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신청 전(3학년)에 수강하여야 함.

* 국제통상학과는 교과교육영역 과목 중 상업교수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2단계

복수전공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는가?

교과목명	이수사항			
	학점	이수여부	성적	비고
(각과)교과교육론	3			
(각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각과)교과논리및논술	2			
합계				

*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은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신청 전(3학년)에 수강하여야 함.

* 국제통상학과는 교과교육영역 과목 중 상업교수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표시과목 | 국어

교육부		본교	비고
1	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	교과교육영역
2	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국어사	
3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국문학사	
4	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소설교육론
		시가교육론	-
		희곡교육론	-
		수필교육론	-
5	의사소통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합계			합계

* 1~5분야(영역)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영어영문학부 (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표시과목 | 영어

교육부		본교	비고
1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	교과교육영역
2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1)	필수
		영문학개론(2)	
4	영어문법	의사소통을위한영어문법	
5	영어회화	영어회화(1)	필수
		영어회화(2)	
6	영어작문	영어작문(1)	필수
		영어작문(2)	
7	영어독해	고급영어독해	
8	영어음서음운론	영어음성체계이해	
9	영미문화	영미문화특강	
합계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중국학부(중국어문전공, 중국경영전공)
 표시과목 | 중국어

교육부		본교	비고
1	중국어교육론 또는 외국어 교육론	중국어교육론	교과교육영역
2	중국어학개론	-	
3	중국문학개론	중문학개론(1)	필수
		중문학개론(2)	
4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	
5	중국어회화	고급중국어회화(2)	
6	중국어작문	중국어작문(1)	2과목중 택1
		중국어작문(2)	
7	중국어강독	기초중국어강독연습	
8	한문강독	고문선독	
9	중국어권문화	-	
합계			-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한국역사학과
표시과목 | 역사

교육부		본교		비고	
1	역사교육론	역사교육론	역사교육론	교과교육영역	
2	역사학방법론	역사학개론	-	2과목 중 택1	
		사료강독	사료강독(1)(동양사) 사료강독(2)(동양사)		
3	분야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사상문화사		
		사학사	한국사학사		
4	한국사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	2과목 중 택1	
		한국중세사	한국중세사(고려시대사)		
		한국근세사	한국근세사(1)(조선전기사)		2과목 중 택1
			한국근세사(2)(조선후기사)		
한국근대사	한국근대사				
5	세계사(Ⅰ)	동아시아고대사	동아시아고대사·중세사	2과목 중 택1	
		동아시아중세사			
		동아시아근세사			
	세계사(Ⅱ)	서양고대사	서양고대사·중세사	2과목 중 택1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6	현대사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		
합계					

* 1~4 및 6그룹에서 각1과목 이상 이수, 5그룹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동아시아·서양사 과목 중 각각 1과목 택일 필수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교육학과
표시과목 | 교육학

	교육부	본교	비고
1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2	교육과정	교육과정론	
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4	교육철학	교육철학및교육사	
5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6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7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	
8	교육행정	교육행정학	
9	학교·학급경영	학교·학급경영	
10	학교상담론	학교상담론	
11	교육공학	교육공학	
12	평생교육	평생교육개론	
13	교육조직관리론	교육지도성및조직발전	
14	교육정책론	-	
15	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방법론	
합계			

* 2009학년도 이후 교육학과 입학자의 이수사항 중 교직이론, 교직소양(4학점)과 교육실습(4학점) 과목은 전공과 중복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중복인정된 만큼 전공을 추가 이수해야함.

—교육학과 학부과기초(M)과 전공선택(D) 이수과목 중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50학점 이상이어야함.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도덕·윤리 연계전공
표시과목 | 도덕·윤리

교육부		본교	비교
1	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육론	교과교육영역
2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외 3과목	윤리학개론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동양도덕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서양도덕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	응용윤리
		윤리와논술	-
3	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외 2과목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합계			

* 1번 그룹에서 1과목, 2·3번 각 그룹에서 3과목 이상 이수해야함.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경제학과
표시과목 | 일반사회

	교육부	본교	비고
1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육론	교과교육영역
2	정치학	정치학개론	
3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경제학원론1	
		경제학원론2	
4	법과사회	법사회학	
5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	
6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사회학총론	
7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행정학의 이해와 응용	
합계			

* 경제학과 주전공·다전공일 경우는 3영역 모두, 이수, 경제학과 외 학생은 3영역 2과목 중 택일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국제통상학과
표시과목 | 상업

교육부		본교	비고
1	상업교육론	상업교육론	2과목 중 1개과목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 포함가능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1	2과목중 택1
		경제학원론2	
	상업경제	-	
3	회계원리	-	
	회계이론	회계이론	
	세무회계	-	
4	경영학원론	-	
	마케팅관리론	-	
	재무관리	재무관리	
5	무역학개론	-	
	무역영어	무역영어	
	무역실무	무역실무	
6	회계정보처리론	-	
	전사적 자원관리(ERP)	ERP개론	
합계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융합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과
표시과목 | 기계

	교육부	본교	비고
1	공업교육론	공업교육론	
2	기계설계	기계설계	
	기계제도	-	
	CAD/CAM	-	
3	재료역학	-	
	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열역학	
4	기계재료	기계재료학	
	기계가공	-	
	제조공학	-	
	기계공작법	기계공작법	
	정밀공작법	-	
5	유체기계	-	
	전자기계	-	
	제어공학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	
합계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융합전자공학전공
표시과목 | 전자

	교육부	본교	비고
1	공업교육론	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회로이론 I	
2	전자기기	-	
	전자회로	전자회로 I	
	전기전자실험	-	
3	반도체공학	반도체공학 I	
	디지털회로설계	-	
4	디지털시스템	-	
	디지털회로실험	-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	
5	통신이론	-	
	디지털통신	디지털통신	
	전자파응용	-	
합계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나노전자물리학과
표시과목 | 물리

	교육부	본교	비고
1	물리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물리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교과교육영역
2	역학	역학 I	모두 이수
		역학 II	
3	양자역학	양자역학 II	
4	전자기학	전자기학 II	
5	열및통계물리	열및통계물리	
6	파동및광학	파동및광학	
7	전산물리	전산수리물리학	
8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	
합계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식품영양학과
표시과목 | 영양교사(2급)

	교육부	본교	비고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상담	필수
2	영양학	영양학	모두 이수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단체급식관리및실습	단체급식관리및실습	모두 이수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	1과목 이상 이수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	필수
	식품학	-	
합계			

- * 1·4·5번 그룹에서 1과목 2·3번 각 그룹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해야함
- *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및실습'은 학교현장실습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함.
- * 졸업 후 영양사면허증 취득 후 교원자격증 배부 가능

VIII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연극영화전공
표시과목 | 연극영화

	교육부	본교	비고
1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육론	교과 교육 영역
2	연극사	연극사(세계)	
3	영화사	영화사(세계)	
4	연극개론	-	
5	극작	-	
6	연기(화술)	연기1	
7	연극제작	연극제작(공연제작)	
8	영화개론	영화개론	
9	시나리오작법	시나리오작법	
10	영화기술	영화기술(촬영)	
11	영화제작실습	영화제작실습(초단편)	
12	창작연극워크샵	창작연극워크샵 I	
13	스토리텔링워크샵	-	
14	영화분석과비평	영화분석과비평	
합계			

Ⅷ 교직이수사항 점검

3단계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가?

학 과 | 체육학부
표시과목 | 체육

	교육부	본교	비고
1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	교과 교육 영역
2	체육사·철학	스포츠철학	
3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사회학	
4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	
5	운동역학	운동역학	
6	체육측정평가	체육측정평가	
7	건강교육	건강교육	
8	운동실기	운동실기	
9	특수체육	특수체육	
10	운동학습및심리	운동학습및심리	
11	여가레크리에이션	여가레크리에이션	
	합계		



기타프로그램
안내

KOOKMIN UNIVERSITY

I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1. 학교현장실습이란?

교생실습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일선학교에서 4주간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수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본인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확인하는 교직의 필수 과정이다.

2. 학교현장실습 진행 절차

구분	시기		내용	비고
	1학기 실습	2학기 실습		
교과교육론	실습 직전 학기까지 이수		중등학교 정교사 취득예정자: ○○교육론, ○○교재연구지도법 영양교사 취득예정자: 영양교육및상담, 단체급식관리및실습	
실습학교 섭외	실습신청하기 전까지		개별실습 또는 배경실습 신청	
학교현장실습 신청	3학년 2학기 (10월)	4학년 1학기 (5월)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원정보 → 학교현장실습신청 → 저장 및 출력 → 교직과정부 제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3학년 2학기 (10월)	4학년 1학기 (5월)	실습학교에서 수령 후 본교 제출	본교양식 사용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4학년 1학기 (3월)	4학년 2학기 (9월)	실습신청자 전원 필히 본인이 수강신청 혹은 일괄 신청	필수
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1	3월	9월	사전교육 및 준비물 배부	출결내역 성적반영
학교현장실습 출석수업2	4월 or 5월	10월	교직과정부 홈페이지 내 공고 (http://teaching.kookmin.ac.kr)	출결내역 성적반영
학교현장실습 평가회	5월	11월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출결내역 성적반영
성적부여	6월	12월	교직과정 홈페이지 내 출석점수 공고 및 최종성적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3.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준비물	내용	비고
실습일지	평가표, 출근표: 실습일지에 포함	실습종료 후 실습일지, 평가표, 출근부 반드시 제출
명찰	교직과정부에서 제작	최초 1회 1학기 실습자들에 한함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요구

I 교육실습 - 교육봉사활동

1.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 교육봉사활동 이수 학점

재학기간 중 2학점 60시간(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대상	기관 인정 범위	인정 활동 범위	비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가증/허가증 사본 제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부, 구청 등)에 등록된 기관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혹은 허가증등을 보유한 단체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인경(교원양성기관(우리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수업지도의 형식)으로 교육봉사 수행	교육관련봉사활동 (무보수)

* 인정불가활동 및 기관: 교재제작, 교사업무보조, 행사기획,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참석, 각종노동활동(청소 및 행사보조 활동) 등 학생교육과 직접적 관련 없는 활동과 민간복지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인정불가

4.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교육봉사 누적 시간이 60시간 완료(예정)되는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

5.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개시 전에 교직과정부(본부관105호)로 제출하여 봉사활동 대상기관의 적합 여부를 확인
- 확인서- 수강신청 한 학기의 기말고사 기간에 교직과정부(본부관105호)로 제출 (확인서는 제출기간외의 기간에 접수하지 않음)

6. 교육봉사활동 성적 인정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시간 확인 후 성적 처리(P/N)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확인서 양식은 교직과정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I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 관련 FAQ



교육 실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과 60시간의 교육봉사를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교직과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학 중에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실습 출석수업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나요?



출석수업은 학교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실습 성적에 출석수업의 출석점수가 반영되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실습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학교에 문의하여 실습비와 수납계좌(실습학교)를 확인하고, 실습동의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교직과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납부처리를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이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실습이 끝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평가표, 출근부를 교직과정부(본부관105호)에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실습일지 담당 교수님의 평가 종료 후 배부하며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폐기됩니다. 이 중 평가표는 본인의 교육실습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습학교에서 국민대 교직과정부로 우편 또는 전자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휴학예정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휴학 중이더라도 차년도 학교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차년도 휴학예정이라면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전공과 교직복수전공으로 교직이수 중인데 어떤 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나요?



복수전공이수자는 주전공 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전공으로 이수 시 복수전공학교현장실습은 면제됩니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I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Q 개별실습과 배정실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실습생이 직접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섭외하는 것을 개별실습이라고 하며, 교직과정부에서 협력학교에 의뢰하여 실습학교를 배정받는 것을 배정실습이라고 합니다.

구분	개별실습	배정실습
실습학교 섭외방법	실습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	교직과정부에서 협력학교에 의뢰
실습가능학기	1학기 및 2학기 실습 가능	1학기 실습만 가능
내용	실습학교의 위치 및 교통편 등 실습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과정부에서 임의 배정 하므로 실습 학교 위치, 교통편 등 실습 제반여건을 선택할 수 없음. - 교직과정부에서 섭외하는 실습학교 중 실습하고자 하는 과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실습학교 배정 완료 후 변경 및 실습 취소가 불가함.

II (산업체) 현장실습

1 (산업체) 현장실습 대상

(기계/전자) 표시과목 이수자만 해당

2 (산업체) 현장실습 자격

5차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산업체) 현장실습 내용

재학기간 중 산업체에서 4주(이상) 현장실습 이수

4 산업체의 범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 장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5 기타유의사항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문의처: LINC+ 사업단 T.910-6317

III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교내 실습 운영 목적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마련하고 개설하여 운영하므로 교원양성과정 중 안전교육을 강화

2. 실습 운영 개요

가. 이수 대상

- 1)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생 및 수료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 2)교육학과생(사범계열) 중 3, 4학년

나. 실습 이수 횟수

2018학년도 1학기(2018년 8월)이후 졸업자 : 2회 실습 필수

다. 교내실습 안내

- 1)과정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교내실습횟수: 학기당 1회 실시 예정
- 3)실습시간: 180분(이론 60분 + 실습 120분)
- 4)실습인원: 50명 ~ 120명(실습 인원은 진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 이론교육: 통합교육 실시
 - Ⓑ 실습교육: 분반을 통하여 실시
- 5)진행기관: 교직과정부 협력업체
- 6)교육내용
 - Ⓐ 이론 교육: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등
 - Ⓑ 실습 교육: 애니인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 기타 상 처 처치 실습 등
- 7)신청방법 및 실습일정

신청방법	실습인증기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 학적정보 확인 선택 → 신청 클릭	실습시간 전체를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10분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

라. 교외 위탁실습 안내

1)실시기간 및 프로그램

기관명	이수 인정 프로그램		참고사항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대한심폐소생협회	-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또는 전문가 과정	심폐소생술 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8시간 기본교육 후 수첩 수령자		

- 2)위탁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 3)교외위탁실습 수료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취득된 것만 인정 가능
- 4)신청방법 및 실습인정: 발급받은 수료증/수첩을 당해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제출(기간 엄수)

IV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구분	4년제 대학	비고
2013.03.01이후 입학자	2회이상적격	미응시, 부적격은 교원자격증 취득불가
2012년 이전입학자 중 2013.03.01이후 졸업자	1회이상적격	

2.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대상자 및 적격판정 횟수

가. 응시 대상자

구분
1. 교육학과(사범계학과)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적격판정 안내

소속	입학연도/교직선발년도	적격판정 횟수	비고
교육학과 재학생	2013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적격	미응시, 부적격은 교원자격증 취득불가
	2012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적격	
교직과정 이수자	2015년 1월 이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회 이상 적격	
	2014년 이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1회 이상 적격	

3. 과목명 및 수강대상

가. 개설 과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가상대학 내 자동생성)

나. 수강 대상

- 1) 교육학과 및 교직이수예정자 재학생 및 수료생
-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생 및 수료생 전체(단, 직전학기 이전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불합격한 후 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은 제외함)

IV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4.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문항 및 합격 기준

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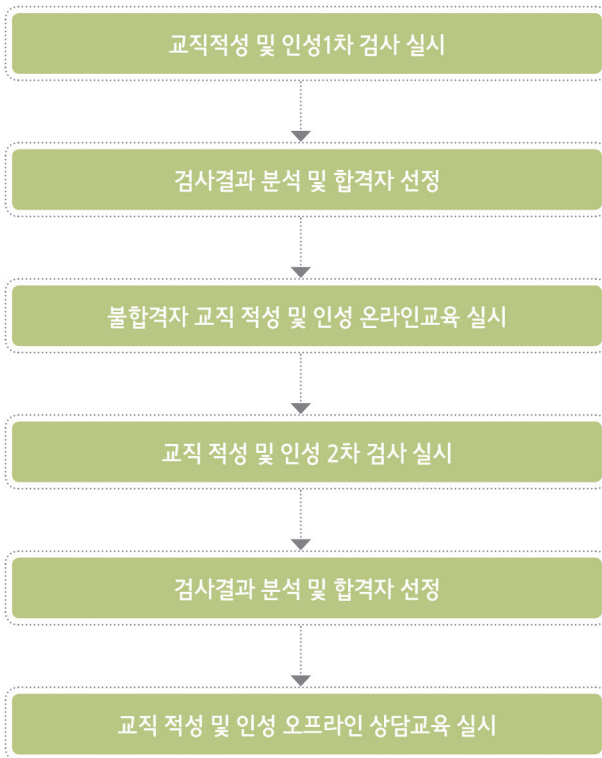
- 1) 14개 영역 각 영역별 5문항씩 총 70문항으로 구성 (총 280점 만점)
- 2) 70개 문항 중 7개 쌍문항(14개문항)은 답변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로 두 문항의 답변 이 다를 경우 0점 처리됨.

나. 합격기준 : 202점 이상 취득(280점 만점 기준)

다. 반드시 감독입회하에 검사 진행

5.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프로세스

진행구분



교직과정 안내 연락처



교직과정부
02)910-4225

